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4. 4. 5.] [대통령령 제34390호, 2024. 4. 4., 일부개정]

삭 제

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4. 4. 5.] [대통령령 제34390호, 2024. 4. 4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(산업관세과) 044-215-4433

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. <개정 2021. 1. 27., 2021. 4. 23., 2021. 11. 12., 2021. 12. 31., 2022. 4. 27., 2022. 6. 22., 2022. 7. 20., 2022. 8. 17., 2022. 11. 10., 2022. 12. 30., 2023. 2. 23., 2023. 4. 28., 2023. 6. 1., 2023. 8. 24., 2023. 10. 12., 2023. 11. 16., 2023. 12. 26., 2024. 1. 18., 2024. 3. 29., 2024. 4. 4.>

부칙 <제34390호, 2024. 4. 4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별표 / 서식

- [별표 1]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2]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3]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4]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5]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6]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7]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8]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9]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[별표 10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1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2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3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4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5] 삭제 <2023. 12. 26.>
- [별표 16] 삭제 <2022. 12. 30.>
- [별표 17] 삭제 <2022. 12. 30.>